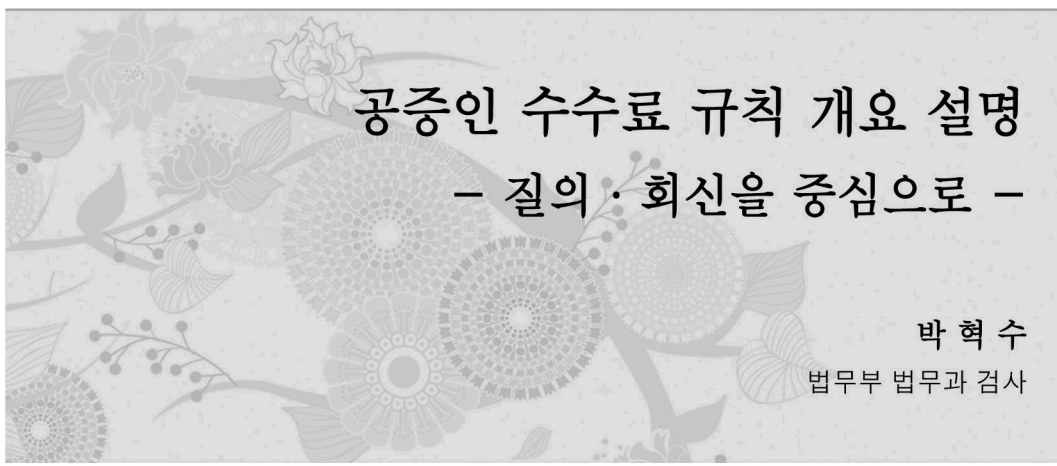




1. 들어가며

공증인은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는 공문서로 보며, 공증인은 규칙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이하로 임의로 할인해 줄 수도 없다.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공증인법의 위임에 따라 1962. 1. 16. 제정된 후 2010. 2. 7. 13번째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규칙이 공증 수수료 산정과 관련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수수료 산정이 쉽지 않아 동일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가 공증사무소마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질의 회신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공증사무소의 수수료 임의 할인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수료 산정 문제는 각 공증사무소의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

이에 수수료 규칙의 개정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공증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까지의 질의 회신 결과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증 유형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II. 유형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

1. 총 칙

가. 규칙 내용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27조 (특수한 사정 하에서의 직무집행) 이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 4시간 이내에는 5만 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 실비액
4. 숙박비 : 실비액

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제31조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

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 (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5조 (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① 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38조 (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질의 회신

○ 하나의 문서에 다수의 촉탁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수료와 그 분담비율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는 각 촉탁인 별 급부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ex. 외국대학 입학 시 부모가 작성하는 재정보증서), ② 사실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촉탁인이 한 가지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

가. 통상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

(1) 규칙 내용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 수 료
200만 원까지	11,000원
500만 원까지	22,000원
1천만 원까지	33,000원
1천500만 원까지	44,000원
1천500만 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② 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8조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 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 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2) 수수료 산정 원칙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그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또는 어음·수표의 액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규칙 제2조).

※ 수수료 범위는 1만1천 원 ~ 300만 원

○ 다만, 증서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 당 500원의 부가수료를 추가한다(규칙 제3조).

(3) 법률행위 목적(=급부)의 가액 결정 기준

- 1)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공증인이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이다.
(규칙 제4조)

2) 결정 기준

- 법률행위의 쌍방이 촉탁한 경우에는 쌍방 급부 가액을 합산하고, 일방만 촉탁한 경우에는 그 일방의 급부만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규칙 제5조, 제6조 본문).
- ※ 법률행위 중 채권행위의 목적은 급부, 물권행위의 목적은 물건이나 실무 상 물권행위가 독립적으로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 계약 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결정.
- 단, 일방 촉탁에서 대립되는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한다(규칙 제6조 단서).
- ※ 그 밖에 규칙은 부수적 법률행위 · 채권담보 계약 · 지역권 설정계약 · 정기지급계약 · 집합건물소유및관리규약설정 계약 등의 목적 가액 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7-10조, 제13조의2).

3)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촉탁인들의 급부의 가액 결정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각 급부의 가액을 2,000만 100원으로 간주한다(규칙 제13조 본문).
- ※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봄.
- ※ 일방 당사자의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만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규칙 제11조가 적용되고 제1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법률행위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해 급부의 최저가액이 2,000만 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2,000만 100원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본다(규칙 제13조 단서).

나. 집합건물 규약 관련 공정증서 수수료

(1) 규칙 내용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전유부분의 개수	수 수 료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100원

② 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000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000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 6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6천 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 6천 원으로 한다.

(2) 수수료 산정 원칙

○ 전유 부분의 개수 및 단지내 건물의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규칙 제13조의2).

다. 승인증서 등의 수수료

(1) 규칙 내용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2) 적용대상

○ 상대방의 의사가 이미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여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를 보충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증서의 제목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상 실질적인 ‘승인허가, 동의, 계약의 해제’ 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 예를 들어, 문서의 제목이 ‘승인허가서’ 또는 ‘동의서’ 등으로 되어 있어도 형식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단순 승인·동의하는 것이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인정될 경우 규칙 제14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가 적용됨.

(3) 수수료 산정 원칙

○ 통상적인 법률행위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1/2로 한다(규칙 제14조).

○ 참고로, 승인서 등 인증의 경우 통상적인 법률행위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1/4이 된다(규칙 제14조, 제20조).

(4) 질의 및 답변

1)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 대주의 급부는 ‘약정한 금원을 대여할 의무의 이행’ 이고, 차주의 급부는 ‘약정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무의 이행’ 이므로(민법 제598조), 대주와 차주의 각 급부를 합산한 금액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이 된다.

※ 다만, 차주가 지급해야 할 이자는 규칙 제12조에 의해 급부의 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2) 증서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자료 등으로 가액산정이 용이한 경우

○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 법률행위의 내용 그 자체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외에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로 보므로, 증서에 가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규칙 제13조 본문의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한다.

○ 다만, 공시된 자료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목적물인 토지, 임야 등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토지, 임야 등은 공시지가,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 동산의 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의하여 산정 가능)에는 규칙 제13조 단서의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참고로, 촉탁인이 공증수수료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기본계약서(공정증서 대상 서류)에서 가액을 삭제하고 관련 계약서(첨부 문서로 처리)를 첨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의 내용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의해 쌍방 당사자의 급부 가액을 산정한다.

3)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가액 결정이 가능한 급부와 불가능 급부가 혼재된 경우

○ 이 때는 급부의 전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칙 제13조 본문이 적용된다.

○ 가액 결정이 가능한 일부 급부의 가액이 2,000만 100원을 초과할 경우 규칙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가액 결정이 가능한 급부의 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본다.

4)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은 산정 불가능하고, 부수적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은 산정 가능한 경우

- 부수적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규칙 제7조),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 그런데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본문에 의해 2,000만 100원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다만, 부수적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이 2,000만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단서를 준용하여 그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본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부 원리금이 변제된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실무 상으로는 통상 남아있는 대여원리금을 대여원금으로 하여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 따라서, 새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양 당사자의 급부를 합산하여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결정한다. 즉, 남아있는 대여 원리금의 2배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이다.

6) 기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먼저 공정증서 작성 대상인 법률행위의 목적(=급부) 및 그 가액을 확정하고, 가액을 기준으로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된다.

3. 사실실험 공정증서 수수료

가. 사실에 관한 증서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 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 5천 원으로 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 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는 그 행위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물건의 상태를 알리는 내용에 관한 증서이므로, 문서의 제목이 확인서, 진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실질 상 증서의 작성만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면 규칙 제15조의 적용대상인 사실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 증서작성에 소요된 1시간 당 2만 5천 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마다 5천 원을 더하고,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규칙 제15조 준용)

다.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 증서작성에 소요된 1시간 당 2만 5천 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마다 5천 원을 더하고,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규칙 제15조 준용).
-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 많은 액에 의한다.

라. 여러 사실의 증서

제18조 (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마.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제19조 (위임장등) ①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 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바. 초청장 작성 수수료

제19조 (위임장등) ③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 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 원을 더한다.

사.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 제3항·제299조의 2·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인증 수수료

가. 규칙 내용

(1) 통상의 사서증서 인증

제20조 (인증행위)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선서인증

제20조 (인증행위) 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제20조 (인증행위)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집합건물 의사록, 서면결의서

제20조 (인증행위) 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 2천 원으로 한다.

(5) 정관, 의사록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8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 원으로 한다.

(6) 위임장

제21조의2 (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

나. 질의 및 답변

(1) 각서, 진술서 등 하나의 문서에 다수의 촉탁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수료와 그 부담비율

- 인증 수수료는 규칙 제20조에 의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인증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50%이므로, 인증 대상 사서증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실험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인 경우 각 촉탁인의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수수료 총액에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사실에 관한 증서' 인 경우 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촉탁인의 수를 곱해야 하는지 문제되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와 달리 촉탁인 별로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 다만, 촉탁인 별로 각기 다른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각 사실에 관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한편,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급부의 가액 기준)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중 많은 액수가 수수료가 된다.
- 다수의 촉탁인이 1개의 인증서를 촉탁한 경우에도 규칙 제20조 제1항의 수수료 상한 50만 원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촉탁인이 여러 명이라도 1개의 증서 작성 시 그 수수료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원칙적으로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각 촉탁인 별로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를 해당 촉탁인이, ② 여러 사실에 관한 증서의 경우 각 사실에 관하여 해당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2) 초청장을 인증하면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증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촉탁인이 각각의 서류를 인증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증인은 각각의 등부번호를 부여하여 별개로 인증하게 되므로 촉탁인은 각각의 인증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촉탁인이 인증대상 문서를 초청장으로만 특정하면서 신원보증서 등 다른 서류를 그것에 첨부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공증인은 초청장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규칙 제20조 제1항,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면 된다.

(3) 등기신청 용도 외 법인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은 ‘법인 등기 시 의사록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규칙 제21조 제2항은 등기신청 목적의 법인 의사록 인증수수료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의사록 인증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러나,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그 인증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 의사록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인증의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3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외국어로 되어 있는 2개 이상의 문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수료

- 촉탁인이 인증 대상 사서증서를 1건으로 특정하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공증인은 그 특정 문서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문서에 대한 인증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 부여 등 기타 공증 수수료

가. 규칙 내용

(1) 사서증서 확정일자 부여

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 원으로 한다.

(2) 집행문 부여

제23조 (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는 1만 원을 더한다.

○ 조건이 붙은 집행문, 승계집행문, 수통의 집행문 부여의 경우에는 1만 원을 추가한다.

(3) 우편 송달

제23조의2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 원으로 한다.

(4) 증서 정본 등의 교부

제24조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증서 원본 등의 열람

제25조 (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 원으로 한다.

나. 질의 회신

- 의사록 인증 시 ‘전자등기를 할 경우 안건 별로 등기신청서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인증서 원본을 3부 이상 요구할 경우의 수수료
 -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인증을 마치면 등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원본 2부는 촉탁인에게 교부(1부는 촉탁인 보관용, 1부는 등기소 제출용)하므로 1개의 등부번호에 대해(즉, 등부번호가 동일한) 의사록 인증문 원본은 2부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고, 3부 이상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 통상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인증서 원본은 1부만 작성되어 촉탁인에게 교부되나, 등기절차에 필요한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는 등기소 제출용이 1부 더 필요하다는 실무의 요청을 수용하여 인증서 원본을 2부 작성하도록 허용함.
 - 따라서, 촉탁인이 동일한 의사록에 대해 3부 이상의 인증문 원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2부를 초과할 때마다 별도의 등부번호를 부여하여 인증문 원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수료 역시 등부번호 마다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별첨]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정리표

순번		유 형	근거조항	수수료 등 계산법			
1	총칙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제26조	-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 적용 ※ 부가수수료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합중수수료(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직무집행)	제27조	(기본 + 부가) 수수료 × 1.5			
		공증 미완결	제28조 제33조	<공증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 기본 : 2.5만 원/시간 - 부가 : 1시간 초과 시 5천 원/시간 추가 <공증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 : 청구 불가			
		일당, 여비(철도임 등), 숙박비	제29조	- 출장 공증 시 수수료 이외의 비용			
		수수료, 일당 등의 감액 불가	제30조				
		동일 사항에 대해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	제31조	- 촉탁인들이 연대하여 부담			
		공증무효(공증인 과실)	제32조	없음			
		수수료 등의 면제	제34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자			
		수수료 등의 예납 등	제35조				
2	공정 증서	법률행위	통상 법률행위	제2조~제13조	- 기본 : [별표 1] 산정된 급부가액에 따라 구별 - 부가 : 4장(표지 제외) 초과 시 1장 당 500원 추가		
			집합건물 규약	제13조의2	- 기본 : [별표 2] [별표 3] - 부가 : 4장(표지 제외) 초과 시 1장 당 500원 추가(26조)		
			승인, 허가, 동의, 해제 등	제14조	- 기본 : [별표 1] × 0.5 - 부가 : 서식 제외한 초과 1장 당 500원 추가		
		사실실험	통상 사실실험	제15조~제18조	- 2.5만 원/시간 - 1시간 초과시 5천 원/시간 추가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	제19조 제1항, 제2항	- 1만 원 - 1시간 초과시 3천 원/시간 추가		
			초청장	제19조 제3항	- 2.5만 원 - 피초청인 5명 초과시 2천 원/명 추가		
			주식회사 설립경과 등 조사	제19조의2	○ 발행주식 액면총액 : 0.5억 원 기준 - 이하 : 100만 원 - 초과 : 100만 원 + (초과액 × 0.0015) ※ 상한 300만 원		
			3	인증	통상 인증	제20조 제1항	- 기본 : 공정증서의 0.5, 상한 50만 원 - 부가 : 서식 제외한 초과 1장 당 250원 추가 ※ 「변역문」 인증의 경우, 부가수수료 적용 제외
					선서인증	제20조 제2항	- 기본 : 공정증서의 0.75, 상한 75만 원 - 부가 : 서식 제외한 초과 1장당 375원 추가
외국어 사서증서	제20조 제3항	- 기본 : 공정증서와 동일, 상한 100만 원 - 부가 : 서식 제외한 초과 1장당 500원 추가					
집합건물 의사록, 서면 결의서	제20조 제4항	1.2만 원					
정관	제21조 제1항	○ 발행주식 액면총액 : 0.5억 원 기준 - 이하 : 8만 원 - 초과 : 8만 원 + (초과액 × 0.0005) ※ 상한 100만원					
의사록	제21조 제2항	3만 원					
위임장	제21조의2	3천 원					
4		확정일자 부여	제22조	1천 원			
5	기타	집행문 부여	제23조	1만 원, 단, 조건있는 집행문, 승계집행문, 수통 집행문의 경우 2만 원			
		우편 송달	제23조의2	- 「우편법」상 우편요금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 정본 송달 : 4천 원			
		증서 정본 등 교부	제24조	- 500원/장 - 청구자의 등본 작성 : 200원/장			
		증서 원본 열람	제25조	1천원/회			

(별표1) 법률행위 목적 또는 어음·수표의 가액	수수료	(별표2) 전유부분의 개수	수수료	(별표3) 단지내 건물 동수	수수료
~ 200만 원	1.1만 원	1~10개	4.4천 원/개	1동~5동	9천 원/동
~ 500만 원	2.2만 원	11~50개	2.3천 원/개	6동~	4천 원/동
~ 1천만 원	3.3만 원	51~100개	1.7천 원/개		
~ 1.5천만 원	4.4만 원	100개~	1.1천 원/개		
1.5천만 원 초과	(초과액×0.0015) 추가 ※ 상한 300만 원				

